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5조의 요약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 ⊖ 손금총액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 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익금액의 열거유형을 보면, 표준산업분류상의 모든 사업수입, 자산 및 자기주식양도금액, 자산임대료, 자산평가차익, 무상받은 자산액, 채무감소·소멸액, 과거 손금의 환입액, 당기비용으로 손금계상된 적립액, 특수관계자가 분여해준 이익, 특수관계자간에 회수 안 된 가지금, 법인에 귀속될 제반수익 등이다.
- 이밖에 법인의 순자산증가로 보는 금액은 ①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미달하는 유가증권 매입가액 차액 ② 법인세액공제 적용(일종의 선납세액)된 외국법인세액상당액 ③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등 배분금액 등도 익금이다.

● 제15조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익금의 범위와 법인소득계산 방법론 (법 제15조제1항)

1. 본 조의 개요와 각 사업연도소득 개념과의 연관성

① 본 조의 개요

익금은 자본·출자납입 및 본 법상 특정거래 이외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 하는데 이는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의 개념을 택하고 있어 법인과 세방법론과 대응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 제14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당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가 순자산증가되는 총금액인 익금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인 익금의 유형으로는 각종 사업수입 이외에 적극적 사업이 아니라도 자산 및 자기주식 양도가액, 임대료, 평가차익, 무상수증익, 채무면제익 등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이밖에 포괄개념으로 특별히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도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의 규정 표현이 있으므로 거래의 적법여부, 원인에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수입·매출 등이 순자산증가의 익금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실질적 순자산의 증가금액이 익금인바, 제2항은 특수관계인인 개인(법인은 제외)에게서 유가증권(다른 자산은 아님)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의 시가미달 매입가액도 익금으로 보며, 해외에서의 수입에 대해 외국법인 세액상당액(세액공제 경우만) 및 동업기업의 배분소득금액도 익금으로 보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② 각 사업연도소득 개념 : 기업회계상 이익개념의 존중

본 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세법상의 소득도 이론상으로는 기업회계상의 이익과 근접한 개념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듯이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결정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 등

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이는 기업회계상의 이익개념을 토대로 세법상의 수정을 가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다.

③ 법인의 과세소득 확정이론 : 포괄적 소득개념인 순자산증가설

일반적으로 소득이란 일정기간에 발생한 이익의 흐름(flow)이라고 정의되며, 자본이란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부의 축적(stock)이라고 정의된다.

이익의 흐름으로서의 소득이란 자본의 원본을 감소시킴이 없이 일정기간 새로이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총합계이므로 결국 사업자본의 원본인지의 여부가 소득개념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즉, 원본자체는 소득이 아니고 원본의 증가분은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순자산증가설의 기초개념이다. 순자산증가설에서는 일정한 과세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증가한 모든 자산금액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뜻이다.

④ 개인의 과세소득 확정이론 : 제한적 소득개념인 소득원천설

과세되는 소득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각 개인이 일정 기간내에 각종의 사업행위·근로행위 및 자산운용행위로부터 얻는 계속적인 수입 중에서 이들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을 소득원천설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면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열거하여 별도로 계속적 행위나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

⑤ 이론상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boxed{\text{각 사업연도의 소득}} = \boxed{\text{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의 총액}} - \boxed{\text{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의 총액}}$$

$$+ \text{부동산 등 간주수익차액(조특법상 차입금이 자기자본} \times 2 \text{ 배 초과하는 임대업이 주사업법인만 해당)}$$

⑥ 실무상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구조

국세기본법이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함은 소득의 개념이나 처리방법 등 뿐만 아니라 관련 재무제표 및 명세서 등도 존중한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완결적인 모든 규정을 완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무상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기업회계에 의해 산출된 기간손익인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적인 수정을 가하여 계산하고 있다. 즉,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기업회계의 기간손익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begin{aligned} \text{각 사업연도의 소득} &= \text{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 \text{익금산입금액} \\ (\text{세무상의 당기순익}) & \quad (\text{손익계산서에 표시됨}) \\ &+ \text{손금불산입금액} - \text{손금산입금액} - \text{익금불산입금액} \end{aligned}$$

2. 기업외계와 세무외계의 비교

1) 기업외계와 세무외계의 목적 및 관련성

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기업회계는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 즉, 출자자·투자자·주주·거래처·소비자·정부·은행 등에게 기업의 경영성과 재정상태를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세무회계는 기업이 과세기간동안 창출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를 위해 정책적 목적이 부여된 여러 규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정공시와 적법한 과세이익계산이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같으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조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②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산원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이러한 목적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전혀 별개의 계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도 하고, 기업회계결산의 결과에 의존하기도 함으로써 여러가지의 원인에 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무상 소득과 회계상 이익은 여러 기간을 통합한 전체적으로는 거의 일치하므로 과세소득의 계산은 기업이익계산을 위한 회계구조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의 계산원리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계산원리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 방법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

③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의존성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 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선언이기도 하며, 또한 기업의 적정한 회계처리 자체가 세법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과세기간동안 적정한 기준에 의한 손익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과 원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면서도 양자의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의 형태와 발생원천은 각 국의 세법과 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 등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각기 달라지므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행 세법을 중심으로 양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조세정책적 입법목적에 의한 차이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은전을 부여하거나 혹은 불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세법상 은전'이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조세정책적 입장에 의하여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서 세법에 의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직 비용지출이나 손실원가발생이 되지 않았는데도 특정 금액의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일정기간 이연시켜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에 '세법상 불리한 부담'이란 기업회계상 인정되는 특정비용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손금산입의 한도액을 두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별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별금·과료·가산금·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서 규정한 징수 또는 납부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과 그 가산금은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비용은 법 또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금액의 세율에 상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 내지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형량이 그만큼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익에 반하고 또한 조세수입도 해당 금액의 세율 비율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계산 범위내만 인정, 초과액은 부인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소비성 지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소득계산상 무한정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

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제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②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주의를, 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으나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은 실제에 있어서 현금·현금등가물로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말하며, 실현주의라 함은 상품·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수익계산상 기준을 말한다.

세무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획득된 권리가 확정된 때 익금에 계상하고, 또 그 사업연도에서 이행할 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에 계상한 후 익금과 손금을 비교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손익계산기준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손익인식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채택하고 있는 손익의 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채택하고 있는 손익의 인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생긴다.

③ 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에 의한 차이

과세소득의 개념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느냐 소득원천설에 의하느냐에 따라 기업소득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생기는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기요류수정손익 등은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하여 순자산증가의 익금산입과 같은 맥락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8은 자산취득이나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받아 자산취득하면 특별이익 등 수입으로 하지 않고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전기손익수정사항도 당기확정된 금액은 이를 당기 익금에 산입하며, 세법에서는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충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익금에 산입할 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경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는 그 일시상각충당금 등 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물론 회계결산상 손금반영안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상만으로도 손금반영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을 순자산증가설에 의하고 있고, 기업회계에서는 순자산증가 중 손익거래에서 생긴 것만을 기간손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간에 차이가 생기는 거래가 있다.

④ 경제적 계산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는 기업실체라는 공준에 의하여 모든 회계처리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과 출자자의 거래 및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편견없이 법인의 계산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의 계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리적기준 금액대로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52조에서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시 그 법인이나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와 계열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27조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법 제28조에서는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수익자불분명 채권·증권이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은 회계주체인 법인이 세법상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제적 계산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라 할지라도 세무회계는 경제적 계산만을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다.

3)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발생형태와 분류

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해소되는 일시적 차이와 해소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로 구분된다.

일시적 차이란 손익의 인식시점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그 발생형태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수익을 빠르게 인식하는 경우
- ◎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수익을 늦게 인식하는 경우
- ◎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비용을 빠르게 인식하는 경우
- ◎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비용을 늦게 인식하는 경우

이상의 기간손익 인식시점차이 성질로 발생하는 차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이가 조정되게 된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의 예로는 각종 준비금 및 감가상

각충당금 등이 있다.

반면에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는 달리 일정기간이 지나도 양자의 차이가 전혀 조정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적 차이의 예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기부금·접대비·지급이자 등의 한도초과액 및 벌과금 등이 있다.

②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이외에도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양적 차이 혹은 금액적 차이란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금액이 세무회계상 특별한 조항 때문에 전액 중 일부만 인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접대비는 기업회계상으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동 범위액을 초과하게 되면 손금을 부인하게 된다.

반면에 질적 차이 혹은 대상적 차이란 비용과 수익의 과목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예를 들면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동 채무면제이익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은 익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월결손금보전충당과 관련되지 않은 것만 익금산입 과세한다.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방법

① 회계당국과 과세당국의 정책적 노력

앞에서 설명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때문에 기업의 결산업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과 세무조정계산 등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자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거나 목적에 다소 어긋나는 경우라도 기업에 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일치시켜 감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노력은 계속 진행중이다.

세무회계는 조세채권의 조기확보 및 징수를 위하여 기업회계보다 조기에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의 손금인정을 이연하거나 유예 및 부인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에 역행하는 많은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존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기간수익의 적정배분뿐 아니라 법인간·행위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차이점을 줄여가는 조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세법상 기업회계의 자주적 처리의 용인

세법은 과세소득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위하여 회계처리방법 선택의 억제, 회계방법 적용조건의 규제, 중요성 판단의 확일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세법의 각종 규제는 기업회계를 왜곡시키고 기업실태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소득계산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기업회계의 자주적 처리를 용인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처리의 전제가 되는 회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회계의 주체인 기업의 자주적 판단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차이조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결산조정(재무제표 반영)사항의 신고조정(세무신고서만 반영)사항 전환 유도

세법은 기업의 의사를 확정결산에 명시함으로써 과세의 안전성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항목의 결산반영을 규정화하고 있다. 특히 감가상각비계산, 퇴직급여충당금계산 등과 같은 기업내부 의사결정과 내부회계거래항목은 확정금액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일시상각충당금 및 기타의 각종 손금·익금사항 등은 특별한 조세정책목적하의 비용인정항목이므로 이들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기재하는 방법만으로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98조 등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외계기준 또는 관행의 존중

① 국세기본법상 일반회계관행 존중

다음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계속적용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관행들은 법적 구속력 즉,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은 모든 기업의 적정한 회계처리와 신뢰성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따라야 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그동안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오다 1990년 3월 29일에 전면 개정·제정되어 1990. 9. 29, 1992. 7. 28, 1994. 4. 30일의 일부개정을 거쳐 시행되다가 1996. 3. 30에 대폭 개정예 이어 98. 4. 1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면서 98. 12. 11 전면 개정되었다. 신기업회계기준은 98. 12. 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2001. 1. 30 이후 기업회계기준서로 대체 적용되었으며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1조가 규정하고 있다.

4. 법인 외계결산과 세무조정

1) 결산조정 개념과 범위

① 세무조정의 의의 및 중요성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의 기록적 사실·회계관습 및 경영자의 개인적 판단

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업경영의 종합계산서라 한다면, 납세자가 제출하는 세무신고서는 세법의 규정과 납세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납세자의 세법적 판단의 종합계산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세무신고서는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의 종합계산서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세법상 일정한 조정을 가하여 작성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연결이기도 한 것이다.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계산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조정방법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직접 계상 반영하는 것을 결산조정이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익금과 손금을 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을 신고조정이라 한다.

② 세무조정의 중요성

법인세신고뿐 아니라 대부분의 세금신고납부제도가 납세자의 신고납세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세무조정은 납세자의 납세도의와 납세윤리를 표상하는 구체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그만큼 세무조정을 잘못하게 되고 또 세무조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에 관계되는 것만큼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세무조정의 충실여부는 납세의무이행의 성실여부와 직결되고 있으며 또 이것은 세법지식의 정도와 세무조정의 이해에 달려 있으나 납세자가 세법을 충

분하게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권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납세사실을 인식하고 세법해석에 있어서도 스스로 올바르게 하여 세무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이 절실히 요청되며, 과세권자는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신고서를 올바른 세법해석과 진정한 납세사실에 준거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의 논리적 연결 및 납세자와의 세무협동을 이룩하는데 세무조정的重要性이 있다.

③ 회계반영과 결산조정 및 관련규정 표현

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산출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상의 이익은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이 이미 반영되어 차감된 금액의 대부분이다. 이런 논리에서 결산조정이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결산과정에 의거 장부에 가장처리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산조정항목은 본 법조문 표현상 “손금으로 계상”이라는 단어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데 본 법 제23조제1항은 제일 처음으로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항목은 결산조정항목이고 나머지 항목, 즉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조건이 없는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라 보면 된다. 즉, 손금계상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확정결산주의 하의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상 당기순손익 계산을 위해 비용손실 등으로 강제계상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물론 대차대조표상 잉여금 반영(⊕감액계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항목이 세법상의 손금용인을 받기 위한 목적만 갖고 있는 경우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에 대한 인식개념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서로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당해 항목의 비용계상이나 인식을 기업회계상도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 세무조정문제가 없다.

④ 결산조정항목에 대한 개념규정 : 내부결산관련 비용·총당금·준비금 등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결산업무시 스스로의 판단과 측정에 의해 계산가능하며 회계정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금액을 위주로 한다. 본 법 제23조 규정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대상이 되는 지출은 재무제표

상 감액반영(손익계산서에 비용·손실·지출로 혹은 대차대조표상 잉여금 감액)되어야 손금산입된다. 감가상각비나 자산평가감액차손 등이 대상이 된다.

⑤ **법인세법상 회계결산반영에 의한 조정항목의 열거·예시**

◎ 결산조정 항목 :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는 규정표현이 있는 경우임 ⇨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제29조), 책임준비금 등(제30조), 퇴직급여충당금(제3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35조), 대손충당금(제34조),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감가상각비,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세법상 손금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 세법상 이연자산(기업회계상 없어짐)의 상각비 중 균등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

⑥ **결산조정의 예외(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산입 가능)**

모든 법인은 적정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회계처리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고려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물론 일반법인의 경우도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함으로써 적절한 상태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의 일시감가상각비나 압축기장충당금 전입을 반영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장부와 회계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세무신고서만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 대응계정과목으로 잉여금계산서에 처분금액으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잉여금계산서에 처분금액으로 반영할 필요없이 세무조정계산서상만의 손금산입·익금조정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에서 잉여금 감액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회계보고서나 재무제표상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된 공표내용(자산과 잉여금만 증액되므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밖에 법인이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나 토지 등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등 조특법상 혜택사항을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도 세무신고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함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⑦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손금산입항목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과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기재만으로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신고조정의 개념과 범위

① 신고조정의 개념과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은 회계재무제표상 반영해야 하는 결산조정과는 달리 재무제표 및 장부에 대하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강요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만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손금과 익금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적립금들이다. 즉, 이들 항목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대차대조표에 잉여금 감액 회계처리하는 결산조정에 의하지 않고 단

순히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확정결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단순히 세무조정사항만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세무조정이 신고조정이다. 결산대차대조표에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② 법인세법상의 신고조정항목의 예시

손금산입·익금산입이라는 표현의 개념(특별히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제한적 표현이 없는 것은 모두 신고조정 가능함)

◎ 신고조정항목 ⇨ 퇴직보험료 등(단체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인세·주민세 환급금의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국세·지방세 과오납 환급이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주민세 등의 손금불산입,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미지급분의 손금불산입 및 자산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등의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세법상 이연자산의 균등상각액의 손금산입,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계되는 손금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상각 및 환입차액(98년까지분 금액임)의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③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고조정항목

◎ 신고조정 항목 ⇨ 일시감가상각비, 압축기장충당금 등과 제반 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제반 준비금의 계상 및 환입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투융자손실준비

금의 손금산입, 국제선박양도차익·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II. 순자산증가·수익·익금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1. 익금의 개념

1) 세법상 순자산증가·익금과 일반수익의 개념

① 익금의 세법상 정의

기업회계상의 경영성과는 특정회계기간의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적정히 표시하여 산출된다. 여기서 수익이란 회계학상의 기본개념으로 별도의 정의는 없고 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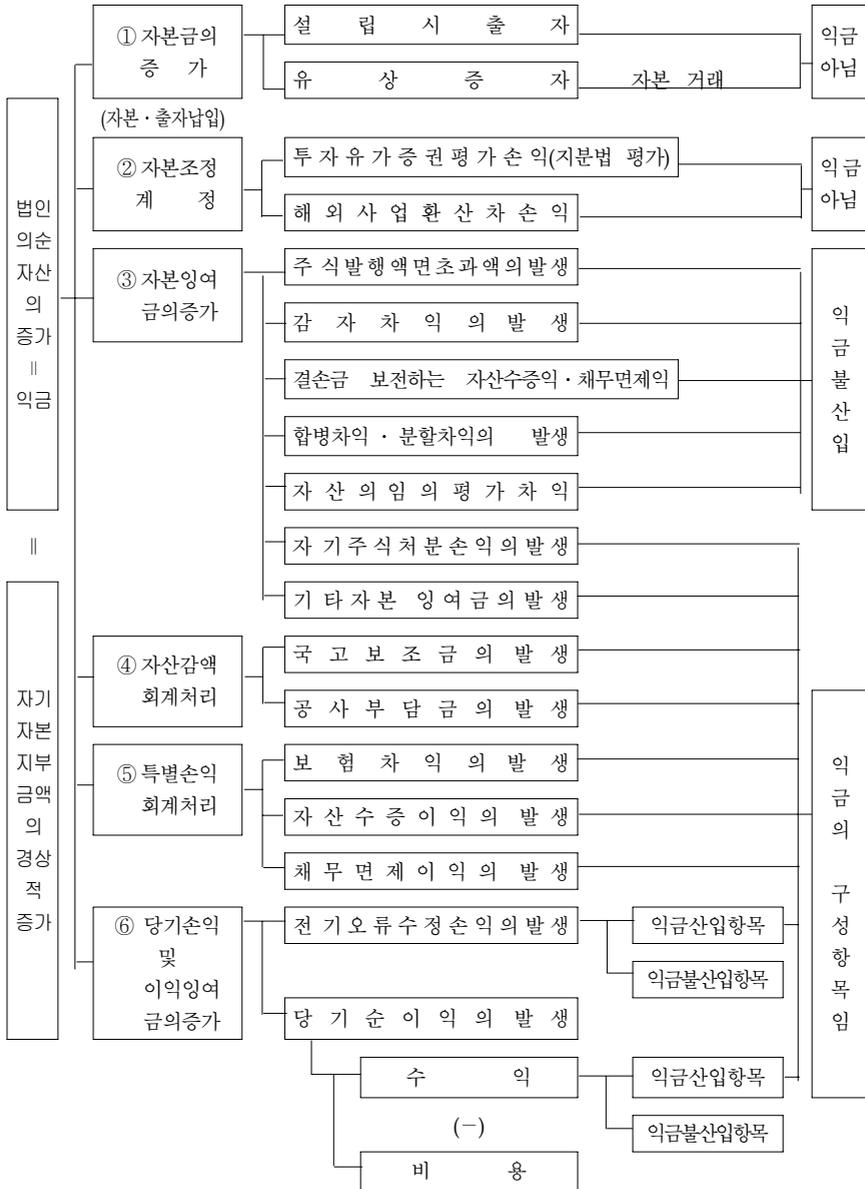
법인세법상으로는 기업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익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순자산의 증가거래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나 본 법에서 별도로 익금불산입한다고 열거 규정한 것들은 제외하며 이들은 대부분 자본거래 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라고 칭한다.

법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익금의 유형으로는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통상의 수입금액과 기타 특별한 대가 제공없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가관계를 가지는 수입금액은 물론 대가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얻는 것도 익금에 포함된다.

② 법인 순자산 증가사항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익금산입의 관련성 도해

이러한 익금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③ 법인 순자산증가거래의 개념과 범위

법인은 법인의 여러 구성원들(주주·경영진·종업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인

격체로서 각 자연인의 활동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발생요인도 자연인의 행위보다 폭 넓고 광범위한 면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도 없어, 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본거래항목이나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금액이 익금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주요 수익사업이나 목적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연관되지 않은 우발적·임시적 항목도 순자산증가사항은 익금이고 순자산감소사항은 손금이 된다. 손실보상, 손해배상도 법인순자산증가사항이므로 익금이다.

익금산입과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보면 세무상 익금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이는 특별항목이나 예외사항을 빼고는 일반적인 개념에 의거한 수익으로 간주하여도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수익개념과 세무회계상의 수입금액을 비교 설명한다.

2) 수익의 개념과 외계·세무비교

① 기업회계상 수익의 개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 대해 재무회계개념체계(문단 117-118)에서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재무회계개념체계

117.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예를 들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실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채가 감소된다.
118. 수익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수익의 종류로는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으로 매출액,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등을 구성하는 계정과목들이 있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것 중에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② 세무회계상 수익의 개념

법인세법상 수익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금액과 기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의 귀속액을 포함한다. 즉, 수익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축약표현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상의 '이익의 증가요인'이나 같은 뜻이다. 이와 같이 기본개념은 같으나 구체적 조문에서 기업회계는 건실성을 위해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고 세무회계는 확정주의를 택함으로 인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기업회계가 경영성과의 적정표시목적하에 보수주의적 개념과 실현주의 개념을 채택하는데 비해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의 조기확보라는 목적하에 조세법률주의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timing difference)가 대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일치한다고 본다.

③ 기업회계상 수익의 분류체계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익과 비용의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대응표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서가 규정하고 있다. 수익항목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영업수익항목(경상적 활동), 영업외 수익항목(비경상항목), 특별이익항목(특별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상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매출액
- (2) 매출원가

- (3) 매출총손익
- (4) 판매비와관리비
- (5) 영업손익
- (6) 영업외수익
- (7) 영업외비용
- (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0) 계속사업손익
- (11)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 (12) 당기순손익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환입, 매출예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9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2.50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2.5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

2.55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 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2.56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④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출자의 납입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금의 유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시킨다면 자본의 원본(원본)이 잠식되어 계속기업의 유지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할지라도 자본거래로 인한 자산의 증가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밖에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는 익금불산입항목도 익금에 불산입하나, 법 제16조에 의한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는 익금산입하며,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것은 별도의 개념에 의거 과세된다.

자본 또는 출자란 개인이 사업수행을 위해 법인에 출자 및 납입한 금액으로서 경제이론상 자본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므로 일단 개인이 보유한 자금은 조세법상의 과세대상으로 과세되거나 원초부터 과세대상에서 배제된 금액으로 이중과세의 배제원칙상 더이상 과세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계정의 모두를 합한 자본지부를 말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직접 납입하여 자본금계정에 기록된 금액이라 좁혀진다. 즉, 법정자본금은 세법상 순자산의 증가개념에서 아예 배제하는 형태로 본 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 또는 출자는 상법 및 기업회계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납입액에 대해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합병회사와 합자회사는 출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히 구분의 필요가 있는 개념은 아니다.

⑤ **익금에서 제외되는 기타의 자본증가거래항목**

본 항의 표현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자본·출자의 납입 이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본 법의 여러 규정상 익금불산입(특히 제17조의 익금불산입 및 제18조의 익금불산입)을 말한다.

즉, 순자산의 증가항목이라 할지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는 자본의 증가거래로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합병차익, 감자차익, 분할차익 등이 있고, 특별항목으로서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액·충당액,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등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수익의 종류 및 범위 (시행령 제11조)

본 조는 익금에 대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의 시행령이 순자산증가나 수익이라고 보는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예시에 불과하며 이들 열거된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순자산증가는 수익이다. 특히 시행령 제11호는 법인이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모두를 수익으로 한다고 포괄개념으로 일반규정하여 순자산증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에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에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신설)
-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2009. 2. 4 신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7. 손급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급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8. 2. 22 개정)
-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 2. 22 개정)

1) 일반적인 영업수입금액 (시행령 제11조제1호)

① 수입금액의 일반적 정의

익금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영업수입인데 영업수입은 흐름(flow)의 개념으로서 기업이 창출한 재화 및 용역의 외부판매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통상 매출액으로 표현되며 영업형태에 따라 수입금액, 도급

금액, 판매금액 및 보험료액 등으로 속성을 구분할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상의 표시에는 통상 매출액이라는 대과목하에 세분류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성격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매출액이란 표현대신 통상 수입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실제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입금액의 범위업종을 열거하였으나 모든 사업수입금액이라 하면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개념과 일치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영리법인의 영업범위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모든 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포괄된다. 따라서 비정상적·음성적이거나 불법적인 영업수입이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이다.

② 매출에누리·매출할인액 제외, 매출할인은 매출액 차감항목

수입금액은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액을 뺀 순액으로 한다고 시행령 제 11조제1호의 ()가 규정하고 있다.

③ 총액수입과 수수료수입

모든 영리행위는 다른 외부구입원재료 등에 일정 가공제조행위를 통해 외부에 판매하는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대리·대행·주선·알선·중개·소개 등은 자기책임하의 손익계산이 아니고 일정범위의 행위를 대행해 주면서 타인의 손익계산을 위해 수행하는 상행위인데, 이때는 수수료만이 수입금액이다. 즉,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고 대리·중개수수료만을 수입하는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 전체가 아니고 당해 대행수수료만이 수입금액이 된다. 위탁개념, 중개라도 자기책임하에 구입, 총판매·수금개념이면 총매출액이 수입금액이다.

따라서 광고대행업·판매대행업 등도 당해 대행수수료만이 수입금액이나 법적 성격의 대행이 아니고 당해 거래 자체라면 전체금액이 수입금액이 될 수 있는바, 이의 사실판단문제는 업계의 관행 및 거래책임의 부담범위에 따라 다르다.

④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추계 (시행령 제11조제1호단서)

본 호의 단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실지조사가 아니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임대의 실제현황을 반영한 방법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임차자로부터 받는 실제의 임대수입금액에 수취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시중은행 정기에금 이자율의 평균)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추계결정시 수입의 원천은 임대료뿐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6조 【정기에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7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참고 : 2010년은 4.3%이었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이율도 4.3%임)

⑤ 부동산임대업의 추계시 소득계산사례

-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건물을 임대해 준 사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는 경우 당해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1년만기의 정기에금 이자율평균은 연 3.7%라 가정함) 15,220,000원이 된다.
 - 임대료 : $1,0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2,000,000\text{원}$
 - 간주임대료 : $40,000,000\text{원} \times 365 / 365 \times 3.7 / 100 = 1,48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1,480,000\text{원} = 13,480,000\text{원}$
- ⇒ 이 때 실제 지출경비 및 기준경비율 합계액 비율을 50%라 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의 급여총액이 5,000,000인 경우에 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하면 1,740,000원이 된다.

$$13,480,000\text{원} \times 50/100 - 5,000,000\text{원} = 1,740,000\text{원}$$

사례에서 추계소득금액=수입금액(또는 총익금)×실제 지출경비 및 기준경비율÷당해 사업연도의 대표자 총급여액으로 산출된다. 대표자 급여총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실제 지출경비 및 기준경비율을 제정할 때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업소득금액계산상 개인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지만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소득금액계산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⑥ 수입금액의 결정: 기업회계상 순매출액

기업회계상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매출할인은 매출대금의 조기수금할인 금융비용 등인데 차감한다.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인식기준 규정내용

세무상 수입금액은 접대비 등의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금액이며 세무 실무상 과세관청이 법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며 기업회계상의 순매출액에 세무상 수입금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가감원인의 하나는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기업회계에서의 매출액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이며 실현된 것만이 계상된다. 이에 관하여 제품상품의 수익귀속시기는 익금확정일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K-IFRS 제1018호 【수 익】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 규정에서도 동일함.

2) 제반 수입 및 귀속금액 (시행령 제11조제10호)

① 익금항목이 포괄적 규정

현대기업의 거래형태가 복잡하여지고 또 경영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창출활동은 극도로 다양하고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은 자신의 특성에 의거 고유한 계정과목을 설정하거나 대외비밀목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은닉할 수도 있는바, 익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법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익금항목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그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본 호의 규정과 같이 익금산입을 위

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였다. 즉,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수익의 금액은 모두 익금에 해당되며, 일반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생기는 다음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도 익금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물·작업설물 등의 판매금액, 수입권 등 권리의 양도금액, 매입할인금·보급·장려금,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보상금, 토지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금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세법에 포함된 특유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의 환입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금액, 인정이자계산금액 등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을 구성하게 되며 각 항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상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은 비록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익금항목이 된다.

② 공병 등 용기보증금의 미반환기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주류·청량음료 등 공병 등을 사용하는 영업의 경우 공병 등의 용기보증금에 대해서는 미반환율을 곱하여 익금산입하며, 반환금이 보증금잔액을 초과하면 실제 지급일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자산의 양도금액 (시행령 제11조제2호)

① 양도되는 자산의 개념과 범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 즉 제품·상품 및 부산물 등의 재고자산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제1호의 일반적인 영업수입금액에 이미 규정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본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일반적인 재고자산 양도 외에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양도, 즉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의 양도를 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의 자산을 주로 설명하겠는데 여기서 자산이란 통상의 재산 혹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비 등 이연성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당해 법인에만 고유하게 자산성을 갖는 것으로 환가성이 없어 양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자산 양도금액의 개념

양도되는 자산은 그 고유의 가치는 일정한 가액이라 할지라도 양도의 상황 및 조건과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유상인 고가·적정가 및 저가와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바, 무상인 경우는 양도금액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본 법 제52조에 의거 무상인 경우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거 무상거래가 부인 되면 이는 세무상 과세권자가 결정한 금액에 의거 유상양도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자산거래에 대한 공정한 평가금액을 거래쌍방간에 주고받는데 이 금액을 말한다.

③ 영업양도

자산에는 각 개별재산뿐 아니라 재산의 집합체도 양도대상이다. 이를 영업양도라 하는데 영업양도금액 전액이 자산양도금액이 된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영업양도계약상의 총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개별 자산 대응금액의 안분금액이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총액을 익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합병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상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비록 합병되는 제반자산의 양도가액을 일일이 평가하여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금액이 아니다.

④ 자기주식의 양도 (시행령 제113제2호 및 제2호의2)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자기주식이라 하는데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합병, 영업양수, 단주처리 및 기타 회사의 권리실행 목적상으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 제3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제33조[자본조정] 규정에 의거 자기주식은 자본조정계정상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재하고 그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비교적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자기주식은 자

산항목이 아니라 자본의 조정항목으로 자본개념에서 차감되도록 하여 취득목적에 불구하고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3호(기준서 제21호)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기주식처분손실금액과 차감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기표하도록 하여 손익계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도 어쨌든 자산의 일종으로 보아 자기주식의 양도 및 매각으로 인한 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실제 매각이 아니고 자전거래매각익,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후 재취득 관련이익은 실질적 매각·거래 이익이 아니라 일종의 평가이익으로 보므로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주식의 소각손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이 아닌 자본의 증가 및 감소로 보는 반면 이와 대응되는 매각차손익은 결국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손익거래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서 자기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는 방법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⑤ 자기사채의 취득표시

자기사채취득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은 액면가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해당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취득경위를 주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실6.15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금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장부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⑥ 세무상 손익인식

세무상으로는 당초 취득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이금액은 익금이나 손금으로 처리한다. 또한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하기 위해 자기사채를 취득하면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⑦ 자산양도차익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상품 또는 제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처분손익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이나 특별손익으로 계상함으로써 당해 거래의 결과를 적정히 표시·보고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소유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희생원가는 손비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인 구축물을 70,000,000원에 양도한 경우라면 기업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현금·현금등가물	70,000,000	(대) 구축물	100,000,00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10,000,000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고정자산처분손익을 순액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총액 개념에 의거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차) 현금·현금등가물	70,000,000	(대) 구축물양도수익	70,000,000
		(익 금)	

(차) 구축물양도원가	60,000,000	(대) 구 축 물	100,000,000
(손 금)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따라서 그 양도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도 그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양도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총액에 의하여 자산처분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익금의 개념과 손금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일반수입금액이 아니라면 법인소득금액에는 순액으로 하여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소득처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처분된 소득금액의 크기는 총액으로

하는 경우가 순액으로 하는 경우보다 과세되는 소득을 크게 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익금과 손금의 개념에서 세무상으로는 총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자산의 임대료 (시행령 제11조제3호)

① 임대료의 범위

법인의 주된 수입이 부동산임대료 인한 수익이라면 그 업체는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동산임대료 인한 수익이라면 사업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 등에 해당한다. 본 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대여료 인한 요금을 포함하며 이를 반드시 정규적인 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러한 임대업은 제20조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본 호와 같이 별도로 규정한 데 대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자산의 임대를 영업종목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때때로 임대료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임대료를 별개 영업종목의 수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을 영업종목으로 하고 있지 않는 법인도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시키기 위해 자산의 임대료를 별도의 익금항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영구가입금·입회금 등의 안분계산

임대료를 매기 받기도 하지만 최초로 미리 입회금·가입금 등으로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액도 임대료로 한다.

이와 같이 향후의 사용수익을 보장한 경우라도 익금의 귀속연도는 장래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지 않고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단, 탈퇴시 반환이 명백히 약속된 경우는 임대료라 볼 수 없고 보증금으로 보아야 한다.

5) 자산의 평가차익 (시행령 제11조제4호)

① 평가의 이유와 개념

법인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에 오류가 있거나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해 현행의 장부상 가액으로 적정한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평가차익 혹은 평가차손이 발생한다. 평가차손은 객관성 및 세수확보라는 차원에서 재고자산의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나 평가차익은 순자산증가의 일종으로 본다.

물론 평가증 계상된 금액은 기업의 계속사업수행과정에서 향후에 감가상각 및 원가인식방법에 의거 손금이 되므로 결국 세무상으로는 시간차이만 있을 뿐이다.

② 취득원가와 평가차익

기업회계상 자산은 보수적 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지만, 오랜시간의 경과와 물가상승에 따라 자산의 평가금액이 취득원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생기는 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되고 있는바, 이는 회계학상의 객관성과 보수주의 개념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법인이 소유자산에 대하여 평가증을 한 경우 그 평가차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인정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이란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증액에 한함), 재고자산·유가증권·금융기관의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 통화관련 파생상품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42조제1항단서).

기업회계는 취득원가주의 및 보수주의 적용으로 평가차익, 평가증의 수익인식은 불인정하는데 반하여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사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재고자산·유가증권 등으로 제한 규정하였다.

③ 익금불산입되는 임의평가차익의 범위

자산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적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조세부

담의 회피수단으로 자산의 임의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즉,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상각대상자산가액의 증가를 통하여 장래에 감가상각비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결손이 예상되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을 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는 결손을 상계하여 조세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임의평가차익을 반영하고 이로 인한 평가차익 반영분이 장래에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되어 장래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평가차익을 수익의 범위로 열거하면서도 본 법 제18조제1호는 자산의 평가증에 대한 익금산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본 법 제18조제1호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불산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익범위에는 속하나 익금불산입하여 유보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자산평가차익은 적법한 금액만 인정하며 적법한 절차가 아닌 평가차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자산평가차익 및 차손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현황비교

- ◎ 자산의 평가차익 : 순자산증가 사항으로 수익사항이 원칙(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제11조제4호)
- ◎ 자산의 평가차손 : 순자산감소 사항으로 손금사항이 원칙(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제9호)
- ◎ 자산의 평가차익 : 익금불산입(법 제18조제1호)
- ◎ 자산의 평가차손 : 손금불산입(법 제22조)

구분	자산의 종류	과세방법론	관련 규정	결론·효과
평가차익	일반자산의 평가차익 (일반론)	• 순자산증가 수익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가능함.	시행령 제11조제4호(수익·순자산증가의 유형을 예시함)	일반자산(가격 상승) : 익금불산입 일반자산(수량증가) : 익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 예외규정	• 익금불산입사항(다음의 특정자산 외에는 익금불산입 규정함)	법 제18조제1호(자산임의평가증은 익금불산입 원칙)	재고자산(가격평가증) : 익금불산입 재고자산(수량증가) : 익금산입

평가차익	특정평가차익 (일반론의 특별규정)	• 보험업법 평가차익은 익금산입	법 제18조제1호단서	일반유동자산 평가차익 : 익금산입아님. 토지(평가가능으로 변경된 것) : 익금산입하면서 동액 손금산입가능
	유동자산의 평가차익	• 순자산증가입(익금산입아님).	시행령 제11조제4호	
	재고자산의 평가차익	• 평가차익은 익금산입아님(원가법·저가법으로만 평가하므로).	시행령 제74조제1항	
평가차손	자산평가차손	순자산감소로 손금산입가능	시행령 제19조제9호(손금의 일종)	일반자산(수량부족) : 손금산입 재고자산(수량부족) : 손금산입 자산의 시세하락 :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원칙규정	법 제22조	
		천재지변·화재·파손·멸실된 경우 금액 및 손금산입	법 제22조단서,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평가차손	손금불산입이 원칙	법 제22조	재고자산 부패·파손 : 손금산입
	영업상재고자산평가차손(파손·부패 등)	손금산입이 원칙	법 제42조제3항, 시행령 제78조	고정자산의 파손 등 : 손금산입

④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상 적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평가차익은 자동 익금산입되고 평가차손은 손금산입된다. 합병거래시 자산평가증차익은 익금산입 원칙이지만 합병 부동산평가차익에 대해 동액을 손금산입 대응시키고 ⊖요보시킬 수있다. 그러나 합병거래후 인수자산의 자체평가증은 임의 평가증으로 익금불산입한다.

⑤ 감가상각과 평가증의 적용 순위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 순위에 따라 평가차익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먼저 감가상

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다.

고정자산을 평가증하였을 경우 과거의 부인액누계는 세무상 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을 평가차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면 이중과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시행령 제11조제5호)

①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현행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모든 것을 익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발생원천이 영업에서 생긴 것이든 영업 이외에서 생긴 것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경우 민법상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자산가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즉,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수증된 자산의 익금산입 상당가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및 기타의 손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상자산수증이익이 순자산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 익금에 산입되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자본거래인 경우나 주주의 자본납입성격을 가진 것까지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무상받은 자산가액, 무상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등과 상계하면 익금산입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② 무상으로 받는 자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 함은 대가 내지 반대급부라는 경제적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과 같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상표권 등의 무형자산도 포함되고 기타의 금전·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 호의 자산이라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라면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다. 그러나 무환통관물품이나 무상광고선전물품은 익금산입한다.

③ 자산수증이익의 발생유형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로 지정한 자산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산의 가액도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며 이에 대응하여 익금산입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한다.

또한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또 동 주식을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익금산입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증여자가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주로 주주가 해당되겠지만 국가·거래처나 경영진도 관계 없다.

④ 무상의 뜻

무상이란 말 그대로 아무런 반대적 대가가 없이 교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 이외의 것은 모두 유상인바, 유상거래와 유사하여 오류가 발생되기 쉬운 거래로서 부담부증여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부담이나 일정한 급부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밖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도 외관상으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출자 및 주식의 취득시 이러한 기대를 하고 출자 행위를 한 것이므로 무상이 아니다. 즉,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당연히 부여되며 이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 주식 및 출자금의 가치이므

로 이런 무상주 전입도 무상수증익으로 보지 않는다. 단, 이는 본 법 제16조에 의거 배당으로 의제되어 익금항목이 된다.

⑤ 시가의 개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시 정상시가 차이금액도 무상수증익이라 볼 수 있다. 시가는 본 법 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 거래가격,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격, 감정가액, 공시가격 및 상속세법상 평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시가를 구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일반적으로는 경쟁거래시가 등 합리적 방법으로 자산의 정상가액 혹은 시가를 계산해 보고 계산이 나오면 당해 방법에 의해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정상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액 등의 순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감정가액이 어느 이해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가치일 것이므로 이를 많이 활용한다.

법인 차원에서는 무상수증자산은 수증식으로 익금산입하므로 가능하면 낮은 가액인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의한 시가표준이나 공시지가 등으로 하려 할 것이다.

⑥ 무상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

특정거래가 무상거래인지 유상거래인지에 대한 판정은 당해 계약에 대해서만 관찰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상거래에 의한 증여가 아니고 매매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정상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이는 수익항목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논리하에서 무상거래로 보지 않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을 인쇄·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상표화된 단추·바늘·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자재를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 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조건이 있으므로).
- ◎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무상 또는 적정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영리법인에게 사용 수익케 한 것은 등기부상의 명의변경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소유권이전만이 무상수증임).
-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를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인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그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포기주식가치가 없는 경우).
- ◎ 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현물출자자산 중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평가 제외자산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가치없다는 개념).
-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를 차후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부채로 계상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이는 무상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아직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법인의 장래 상환의무가 전혀 없이 타인이 대신 납부한 법인세는 무상수증익에 해당한다(거래성립이므로).

7) 채무면제·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시행령 제11조제6호)

①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외부로부터 적극적 증여행위에 따라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익금이다. 또한 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것도 적극적증여는 아니나 부채감소, 즉 반대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익금이다. 법률적 표현으로는 소극적 증여라 한다.

②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감소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증여와 같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채무에 대해 상대방이 포기한다는 증서 등이 필요하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초과액 등도 익금으로 열거 예시하여 배당분배금 청구권의 포기도 익금이다.

③ 채무소멸로 인한 부채감소

부채가 감소되는 원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변제, 상대방의 적극적 의사표시로 인한 포기 및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소멸 등의 원인이 있는데 이런 적법한 소멸원인이 없는 경우의 채무는 어쨌든 상대방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호에서의 소멸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로 보아야 한다.

법률적 개념으로 소멸시효란 채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결과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 채무가 감소되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즉,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익금이 되고 반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

로서 대손사유 충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의 민법 제 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로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채는 당연히 익금산입되는 것인바, 상대방이 당해 채권 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법인이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상대방 채권자의 지급요청을 승인하거나 법인이 익금으로 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무작정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8) 손금산입액의 환입액 (시행령 제11조제7호)

① 전기손금산입액의 환입액 익금산입이유

이미 지급한 손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한 항목이 그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시 환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입이 그 지급(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나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손금에 산입된 것이라 함은 세무상 손금산입한 것을 말하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하였으나 세무상 부인된 것이라면 환입되더라도 익금산입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손금을 지급하고 계상된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된 때에는 그 손금의 환입액은 기업회계상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사항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내버려두면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익금의 항목으로 특별히 열거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 규정이 없다면 익금산입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또 그 손금의 지급 사업연도와 환입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처리한 것을 환입한 것이라면 원래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손금 및 기간익금이므로 특별히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전기 이전에 손금처리된 금액의 환입은 전기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뿐 당기의 익금

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연도 과세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상도 기간손익확정이나 과세소득의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된 당해 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편리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의 취지이다.

따라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전기에 손금산입하였던 것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은 당기의 익금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전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수정 및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는 사실판단이다.

② 이미 손금산입액 중 환입액의 유형

충당금이나 준비금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나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환입하는 경우 또는 쌍벌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통지처분된 벌과금을 일단 법인이 납부한 후 그 원인행위자인 당해 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경우 등 환입액 및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금액은 지급할 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하여 본 법 제18조제2호는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항목으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의 유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대손금이 그 후 환입되는 경우
- ◎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단체퇴직보험료 등이 환입되는 경우
-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받을 경우
- ◎ 세법상 손금산입 반영 설정된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9) 이익처분방식이 아닌 손금계상적립금액 (시행령 제11조제8호)

① 손금계상적립금액의 익금산입이유

적립금이란 기업이 장래의 결손보전·사업확장 및 사채상환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매 회계기간마다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여 사전에 설정한다는 개념에 치중하여 준비금이나 잉여금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통상 적립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향후 발생될 비용이나 금액을 예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금액인데 법령의 강제여부에 따라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으로 구분된다.

일반법인은 적립금을 비용으로 설정하면서 반대 계정으로 부채과목에 계상하거나 혹은 잉여금처분이나 이익처분방식에 의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표시하기도 한다. 본 호는 이익처분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은 손금불산입이라는 개념인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기에 이르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에 대하여 법인이 재무제표상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 전제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일종의 예외적 규정이다.

그런데 세법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을 별도의 익금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그 법인이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익처분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손금으로 설정할 때에는 동충당금이나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익금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하겠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것을 익금산입으로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10)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 (시행령 제11조제9호)

특수관계자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금액도 순자산증가의 익금해당금액인데 다음의 관련 시행령은 특수관계자 법인간 합

병시의 불공정비율합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비율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는 제외), 법인증자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의 부당가액포기하거나 고가인수, 자본감소(감자)시의 불균등비율감자와 관련된 분여이익을 말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09. 2. 4 개정)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1) 특수관계 소멸될 때까지 외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포기로 보아 익금에 의제한다. 즉,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미수이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뜻이다. 다만,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및 해당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회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치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특별거래사익의 익금산입 (법 제15조제2항)

1. 특수관계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법 제15조제2항제1호)

① 개인 유가증권 시가미달 매입차액의 익금산입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가액거래는 익금·손금부인된다. 그런데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이므로 법인의 불이익이 없고, 개인도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저가양수시의 수증이익은 익금불산입이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즉, 법인과 개인 모두가 과세를 면탈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하는 경우 차액을 법인의 일종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추가 개정하였다. 그러나 유가증권이 아니면 저가매입해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② 법인자산의 저가매입은 상대방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반면에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는 상대방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어 익금산입되어 과세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없는 상대방법인에게서의 저가매입은 특별히 과세문제가 없는데 거래에 따라 상대방법인의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문제가 있다.

③ 의제배당 등의 익금산입과 분배금의 의제

이밖에 시행령 제11조에서 수익의 항목으로 열거한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들 수 있다. 상법상의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이익적립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귀속하는 경우 이익의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라고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의제배당으로서 익금산입해야 할 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본 법 제16조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외국법인세액 (법 제15조제2항제2호)

① 외국법인세액의 총액화 반영

해외로부터 배당이나 이자 등이 들어올 때 해외배당소득의 세액 등이 해당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후 순액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총액을 배당수입 등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액으로 계상 반영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본 법 제5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세액 상당금액이 수입으로 익금반영되며 차변금액을 선납세액으로 처리하고, 총결정납부세액에서 선납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방식을 택할 때 당연히 익금산입되는 회계처리가 되는데 본 호가 세법상 익금산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본 호는 ()로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고 특별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배당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뜻이다(즉 세액차감후 순액배당으로만 익금산입되

며, 외국납부세액은 비용으로만 인정됨. 반면에 외국납부세액을 선납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는 해당액을 일단 익금으로 잡아 총액배당금으로 계상하여 세율 적용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뜻임).

② 외국자회사 법인세자체의 계산금액 의제배당으로 간주

이러한 금액은 총액주의로 반영하여 당연히 총액이 배당소득, 배당수입이며, 원천징수 후 순액으로만 익금처리하거나 기표하면 해당 원천세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물론 해당 원천세액은 선납세액으로 세액공제된다. 이에 추가하여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금액이 들어올 때 이 금액은 외국자회사의 일반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세후 순이익배당인데 외국자회사 자체가 부담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의제배당으로 하며, 대신에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방법으로 국제간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규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세액의 의제배당 귀속시기는 그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주주총회일) 등이며 실제로 배당금의 국내 입금·환가일 등보다 이른 날이 된다.

③ 외국법인세액 배당금의제의 회계처리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산입처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배당총액 8천만원, 원천세액 1천만원, 법인세전 순이익 1억, 법인세 2천만원).

㉠ 외국에서 배당 결정되면 세액원천징수 후 순액이 송금됨.

(차) 현금 등	7천만원	(대) 배당수입	7천만원
----------	------	----------	------

㉡ 여기서 회계처리를 총액으로 한 회사의 경우 세무조정이 불필요함.

(차) 현금 등	7천만원	(대) 배당수입	8천만원
	외국납부선납세액	1천만원	
	(세액공제되거나 손금산입됨.)		

- 순액으로 ㉠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세무조정 사항 발생(익금산입함 : 의제배당)
- 익금산입 1천만원은 기타로 처분
- 세액공제시는 익금산입됨. 혹은 손금산입 1천만원(기타)로 할때는 익금산입

1천만원을 반영할 필요없음.

- ㉔ 외국자회사(100% 출자)의 1억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 2천만원을 납부한 순이익이 8천만원이다. 여기서 외국자회사 법인세 2천만원 자체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며 익금산입하면서 대신에, 본 법 제57조제4항에 의거 선납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나 손금산입된다. 즉 외국자회사 일반법인세액 2천만원 →익금산입(기타), 외국자회사 일반법인세액 2천만원→선납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익금산입됨(손익계산서상 배당수입으로 총액화가산하면 자동익금산입됨). 그러나 세액공제 방법이 아니고 손금산입 방법을 택하면 2천만원→손금산입됨(대신에 외국납부세액 자체의 의제배당 익금산입처리는 불필요하다).

3.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배분 (법 제15조 제2항 제3호)

① 동업기업의 배당수입의 익금산입

동업기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분된 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데, 법인은 원천징수되기 전 총액을 배당수입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나중에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즉, 배분금액 전체를 총액화하여 익금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동업기업이 결손이 발생하여 동업자간 손실을 배분하는 경우에 배분된 결손금은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손금에 반영하고,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

또한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고,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배분시 계산된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 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2010. 1. 1 개정)